

Deloitte.

# 세무관세 뉴스

2024년 8월



# 주목할 만한 사항

## 세무관리

- 전자 거래에 대한 세무 지침
- 석유 사업에 대한 토지 임대료 인센티브 없음

## 법인세 (CIT)

- 계약 해지에 대한 공제 가능한 보상 비용
- 대표 사무소의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 다른 지방에서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금 신고

## 간접세

- 관세 요구 사항을 완료하기 전 수출 가공 기업(EPE)의 부가가치세(VAT) 공제 및 환급
- 현지의 수출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 개인소득세

- 골프 수수료에 대한 개인 소득세("PIT") 규정
- 외국인 항공 승무원의 숙박비에 대한 개인소득세(PIT) 규정
- 직원의 수습기간 동안의 PIT 규정
- 베트남에서 해외 의무 보험 기여금 공제에 필요한 서류

## 외국인 계약자세 (FCWT)

- 도로 화물 운송 서비스에 대한 외국 계약자세("FCWT")
- 모회사에 지급된 대출 이자에 대한 외국 계약자세(FCWT)

## 무역 및 관세

- 2022년 8월 25일 제57/2022/ND-CP호 시행령에 따른 마약류 및 전구체 목록을 수정 및 보완하는 신규 시행령이 발행되었음
-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의 수출입 권리에 대한 안내
- 면세 인센티브를 받은 투자 프로젝트 물품의 사용 목적 변경에 대한 안내 (원본 수입 신고서 분실 시)
- 산업통상부(MOIT)는 관세총국에 "베트남에 상업적 존재가 없는 외국 무역업자"의 정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함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 세무관리 (Tax Administration) 신규 규정

### 전자 거래에 대한 세무 지침

2024년 7월 9일, 재무부는 세무 분야에서의 전자 거래에 대한 지침을 위해 제46/2024/TT-BTC호 시행규칙을 발행했다. 이 시행규칙은 2024년 8월 28일부터 발효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 세무 계정 등록:** 2단계 전자 신분 확인 계정을 가진 개인은 이를 개인 신분증이나 여권 대신 사용하여 전자 세무 계정을 등록할 수 있다. 계정 활성화 요청은 등록된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전송된다.

**초기 세무 등록:** 세무총국 온라인 포털은 세무 등록 정보를 확인하며, 서류 제출 후 15분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 행정 위반 처리:

- 납세자가 세무 등록 마감일을 놓치거나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은 경우, 세무 당국은 서류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 벌금 결정은 납세자의 소명 기간이 끝난 후에 내려진다. 소명이 거부되면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게 통지하고 공식적인 벌금 결정을 내릴 것이다.

(재무부의 2024년 7월 9일 제 46/2024/TT-BTC 호 시행규칙)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세무관리 (Tax Administration)

### 신규 규정

#### 석유 사업에 대한 토지 임대료 인센티브 없음

2024년 7월 30일 세무총국에서 발행한 제 3308/TCT-CS 호 OL 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토지를 임대하여 석유 사업을 하는 기업 및 개인은 특별소비세의 대상이 되며, 토지 임대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이 인센티브는 회사가 투자법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총국의 2024년 7월 30일 제 3308/TCT-CS 호 OL)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법인세 (Corporate Income Tax)

### 지침 문서

#### 계약 해지에 대한 공제 가능한 보상 비용

2024년 7월 25일 Binh Duong 세무국이 발행한 제 20507/CTBDU-TTHT 호 OL에 따르면,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로 인한 보상 비용은 법인세(CIT) 목적의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비용이 공제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발행한 지급 영수증과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령 영수증이 완전히 구비되어야 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4년 7월 25일 제 20507/CTBDU-TTHT 호 OL)

#### 대표 사무소의 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

2024년 7월 26일자로 세무총국에서 발행한 제3227/TCT-CS호 OL에 따르면,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이 있는 대표 사무소는 2013년 12월 26일 제218/2013/ND-CP호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세무총국의 2024년 7월 26일 제 3227/TCT-CS 호 OL)

#### 다른 지방에서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금 신고

2024년 7월 30일 하노이 세무국에서 발행한 제 43610/CTHN-TTHT 호 OL에 따르면, 회사가 분기별 세금 신고 의무가 없어도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잠정 세액을 계산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 활동에 대한 확정 세금 신고는 제 03/TNDN 호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소득이 발생한 지방에 납부할 법인세 배분표도 포함해야 한다. 이 배분표는 제 03-8A/TNDN 호 양식을 사용해 제80/2021/TT-BTC호 시행규칙의 부록 II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는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4년 7월 30일 제 43610/CTHN-TTHT 호 OL)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간접세 지침 문서

### 관세 요구 사항을 완료하기 전 수출 가공 기업(EPE)의 부가가치세(VAT) 공제 및 환급

2024년 8월 1일 세무총국에서 발행한 제3391/TCT-CS호 OL에 따르면, 회사가

- 제 18/2021/NĐ-CP 호 시행령이 발효되기 전에 투자허가서에 따라 EPE로 인증을 받았으나,
- EPE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세 검사를 받지 않았고,
- 제 82/2018/NĐ-CP호 시행령에 따른 비관세 구역 세금 정책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VAT) 또는 국내에서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매입 부가가치세(VAT)가 발생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는 법규정에 따라 공제되거나 환급될 수 있다.

*(2024년 8월 1일 세무총국에서 발행한 제3391/TCT-CS호 OL)*

### 현지의 수출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베트남 회사가 베트남에 주재하지 않는 외국 단체 및 개인 (외국 무역업자)을 위해 상품을 가공하고, 외국 무역자가 해당 상품을 베트남 내 다른 기업에 배송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이는 현지수출입 형식으로 된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공 활동을 수행하는 회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러한 현지 수출입 형식으로 된 상품에 대해 0% 부가가치세(VAT)율을 적용할 수 있다:

- 회사가 모든 필수 지원 문서(판매 계약서 또는 수출 상품 가공 계약서, 수출 위탁 계약서, 수출 상품에 대한 은행 지급 증빙, 세관 신고서 및 기타 규정된 문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 채택한 사업 모델이 제 130/2016/TT-BTC호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 단체가 베트남에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 05/2017/QH14호 법 제3조 제5항 및 제 90/2007/NĐ-CP호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따라야 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4년 7월 26일 제 21117/CTBDU-TTHT 호 OL)*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지침 문서

### 골프 수수료에 대한 개인 소득세("PIT") 규정

2024년 7월 4일 하노이 세무국이 발행한 제 39488/CTHN-TTHT호 OL에 따르면,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직원의 골프 비용 처리 방식은 다음과 같다.

- **회사 명의의 비용:** 골프 비용에 대한 송장 및 증빙서류가 회사 명의로 발행된 경우, 이러한 비용은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PIT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개인 명의의 골프 카드:** 골프 카드가 특정 개인의 이름으로 발급된 경우, 해당 비용은 그 개인의 PIT 과세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Hanoi 세무국의 2024년 7월 4일 제 39488/CTHN-TTHT호 OL)

### 외국인 항공 승무원의 숙박비에 대한 개인소득세(PIT) 규정

2024년 7월 5일자로 발행된 세무총국의 제 2887/TCT-DNNCN호 공문에 따르면, 외국인 항공 승무원의 숙박 비용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항공사의 예약 사무소가 베트남에 있는 동안 승무원의 숙박 비용 및 공항과 거주지 간의 교통 서비스를 지불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이 법인세(CIT) 목적상 공제 가능한 경우, 해당 비용은 승무원들의 개인소득세(PIT)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그러나 비용이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은 PIT 과세된다

(세무총국의 2024년 7월 05일 제 2887/TCT-DNNCN호 OL)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개인소득세 (Personal Income Tax) 지침 문서

### 직원의 수습기간 동안의 PIT 규정

2024년 8월 1일자로 발행된 빈즈엉 세무서의 공문 제21458/CTBDU-TTHT호 OL에 따르면, 직원의 수습 기간 동안의 PIT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 기간 후 근로 계약 체결 시:** 회사가 수습 기간 종료 후 3개월 이상의 근로 계약을 직원과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직원의 총 소득에 대해 누진세율로 개인소득세 (PIT)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는 수습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포함하며, 직원에게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 수습 기간 후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수습 기간 종료 후 직원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지불 시 2백만 VND 이상인 경우, 10%의 고정 세율로 PIT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저소득자의 고정 세율 적용:** 만약 연말 정산 시 직원의 총 과세 소득이 가족 상황 공제를 고려한 후에도 과세 기준 이하이고, 오직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소득만 있는 경우, 직원은 회사에 약속서(양식 제02/CK-TNCN)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약속서를 바탕으로 회사는 직원에게 소득 지급 시 10%의 PIT를 일시적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직원은 약속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며, 약속 시 세금 코드 번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허위 진술이 발견될 경우, 세무 행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4년 8월 1일 제 21458/CTBDU-TTHT 호 OL)

### 베트남에서 해외 의무 보험 기여금 공제에 필요한 서류

회사가 외국인 직원을 베트남에 파견하고 이들이 본국에서 의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베트남에서 해당 보험료를 공제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다음과 같다.

- 관련 보험 기관에서 발급한 납부 영수증 사본, 또는
- 회사(소득 지급자)에서 직원 대신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보험 금액을 확인하는 확인서.

이 서류들은 2013년 8월 15일 제111/2013/TT-BTC호 시행규칙, 제9조 2항 및 2021년 9월 29일 제80/2021/TT-BTC호 시행규칙, 제85조에 따른 요구를 준수해야 한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4년 8월 07일 제 21956/CTBDU-TTHT호 OL)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외국인 계약자세 (Foreign Contractor Withholding Tax) 지침 문서

### 도로 화물 운송 서비스에 대한 외국 계약자세("FCWT")

외국 계약자가 베트남에서 도로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베트남의 조직 또는 개인과 계약, 협정, 약정 등을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FCWT가 적용되며, 적용 가능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 법인소득세 (CIT): 2%;
- 부가가치세 (VAT): 3%

다만, 해당 운송 서비스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제 운송 서비스로 인정되는 경우, VAT 세율은 0%로 적용된다

또한, 외국 계약자가 베트남 외부에서 제공되고 소비되는 서비스로부터 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소득은 FCWT 대상이 아니다.

(Ha Noi 세무국의 2024년 7월 24일 제 42509/CTHN-TTHT 호 OL)

### 모회사에 지급된 대출 이자에 대한 외국 계약자세(FCWT)

베트남 회사가 해외 모회사와 장기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원금과 이자를 10년 후 일시불로 상환하는 경우, 모회사는 해당 이자 소득에 대해 규정에 따라 FCWT가 부과된다.

그러나 모회사가 대출 이자 채무를 탕감하기로 결정하여 베트남 회사가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면, 베트남 회사는 모회사를 대신해 FCWT를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탕감된 이자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비용은 베트남 규정에 따라 과세 소득을 산정할 때 기타 소득으로 기록해야 한다.

(세무총국의 2024년 8월 15일 제 3602/TCT-CS호 OL)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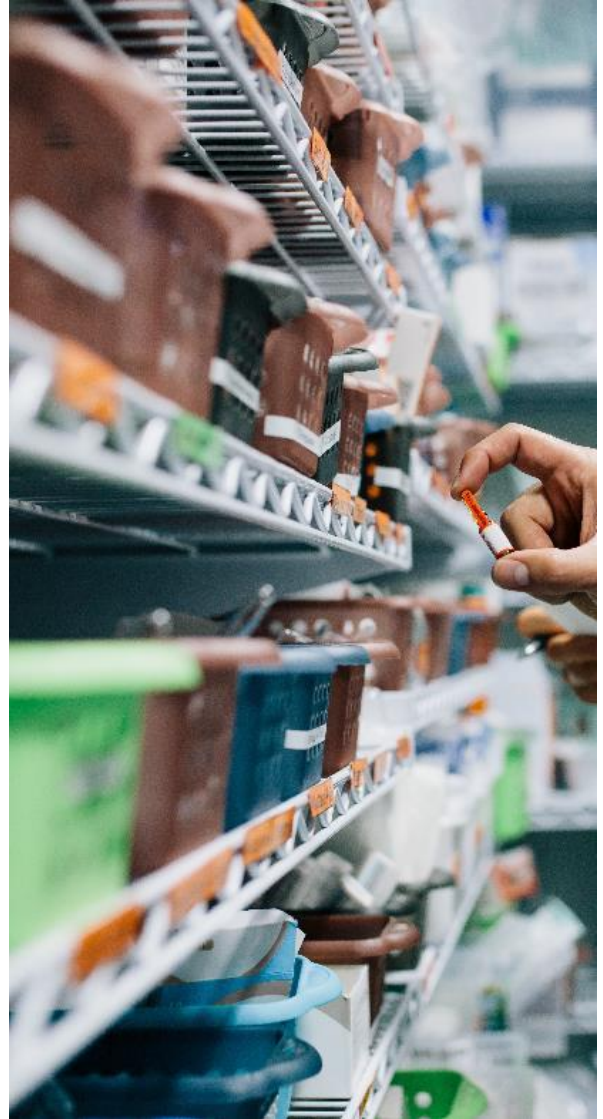
### 2022년 8월 25일 제57/2022/ND-CP호 시행령에 따른 마약류 및 전구체 목록을 수정 및 보완하는 신규 시행령이 발행되었음

2024년 7월 17일 정부는 2022년 8월 25일 제57/2022/ND-CP호 시행령의 마약류 및 전구체 목록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해 제90/2024/ND-CP호 시행령을 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제90/2024/ND-CP호 시행령은 다음을 보완한다:

- 화학물질 **14종**이 목록 II "관할기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분석, 테스트, 과학 연구, 형사 수사 또는 의료 부문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에 추가되었고,
- 화학물질 **1종**이 목록 III "관할기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분석, 테스트, 과학 연구, 형사 수사, 의료 및 수의학 부문에서 사용되는 약물"에 추가되었다.

(정부의 2024년 7월 17일 제 90/2024/ND-CP호 시행령)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의 수출입 권리에 대한 안내

2024년 7월 29일, 관세총국의 관세감독부는 FDI 기업의 수출 권리에 대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제1238/QSQL-GQ2호 OL을 발행한다. 구체적으로:

- FDI 기업이 2018년 1월 15일 제09/2018/ND-CP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으로부터 수입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 해당 FDI 기업은 수입 권리로 물품을 수입할 때 A41 관세 수입 모드를 사용한다;
- 부여된 권리를 이행할 때, FDI 기업은 2021년 2월 5일 제695/TCHQ-GSQL호 공문에 따른 지침을 따른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 ✓ 물품이 이미 수입된 후(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의 수입 권한에 따라 수입된 물품을 포함)
- ✓ 동일한 상태로 사용되지 않거나 가공되지 않은 채로 해외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수출되는 경우

기업은 2021년 8월 16일 제4032/TCHQ-GSQL호 공문의 지침에 따라 B13 또는 B11 관세 수출 모드를 사용한다.

(관세총국의 2024년 7월 29일 제1238/QSQL-GQ2호 OL)

### 면세 인센티브를 받은 투자 프로젝트 물품의 사용 목적 변경에 대한 안내 (원본 수입 신고서 분실 시)

2024년 7월 31일, 세무총국은 제3701/TCHQ-TXNK호 시행규칙을 발행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 면세 투자 프로젝트 물품의 사용 목적 변경에 따른 수입 신고서 개설
- 원본 수입 신고서 분실 시 관세 가치 신고

구체적으로:

### 세금 면제된 물품의 사용 목적 변경에 대한 관세 절차

- 관세 감시를 통해 통관된 세금 면제 물품이 나중에 사용 목적 변경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새로운 관세 수입 신고서가 필요하다.
- 새로운 관세 수입 신고서에서, 관세 신고자는 원래의 관세 수입 신고서 번호를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 목적 변경 사유(예: 국내 소비용)를 전자 관세 신고서의 "비고"란이나 종이 관세 신고서의 "기타 비고"란에 명시해야 한다.
- 만약 수입과 사용 목적 변경 또는 국내 소비 사이의 시간이 관세 서류 보관 기간(즉, 5년)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원래의 관세 수입 신고서 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관세 가치 신고

- 사용 목적 변경이 베트남 내에서 해당 물품의 판매를 수반하는 경우, 신고해야 할 관세 가치는 실제 판매 가격(즉, 청산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관세 당국이 신고된 가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현행 관세 평가 규정에 따라 물품의 상태를 참조하여 관세 가치를 결정한다.

(관세총국의 2024년 7월 31일 제3701/TCHQ-TXNK호 OL)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 산업통상부 (MOIT)는 관세총국에 "베트남에 상업적 존재가 없는 외국 무역업자"의 정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함

관세총국의 2024년 6월 10일 제 2643/TCHQ-GSQL호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MOIT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공하였다.

#### 적용 가능성의 정의

외국무역관리법 및 제90/2007/NĐ-CP호 시행령에 따른 "베트남에 상업적 존재가 없는 외국 무역업자"의 정의는 외국 무역업자의 수출 및 수입 권한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된 것이며,

- 이 정의는 다른 어떤 맥락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 제08/2015/NĐ-CP호 시행령에 따른 정의

- 제08/2015/NĐ-CP호 시행령은 현지 수출입 절차를 포함한 관세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베트남에 상업적 존재가 없는 외국 단체 또는 개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이 표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공하지 않는다.
- 관세총국은 제 08/2015/NĐ-CP 호 시행령에서 사용된 "베트남에 상업적 존재가 없는 외국 무역업자"라는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 제 90/2007/NĐ-CP 호 시행령의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관세총국이 자신의 기능, 임무 및 관리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제08/2015/NĐ-CP호 시행령에서 "베트남에 상업적 존재가 없는 외국 단체 또는 개인"의 개념을 관세 법규에 따라 연구하고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의 2024년 7월 22일 제 399/XNK-THCS호 OL)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 Contact us



**Bui Tuan Minh**  
**National Tax Lead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mailto:mbui@deloitte.com)



**Thomas McClelland**  
**Tax Partn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mailto: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mailto:t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mailto: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mailto: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mailto: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mailto: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mailto: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mailto: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mailto:ngandang@deloitte.com)



**Tran Quoc Thang**  
**Tax Partner**  
+84 28 710 14323  
[qthang@deloitte.com](mailto:qthang@deloitte.com)



**Pham Thi Quynh Ngoc**  
**Legal Partner**  
+84 24 710 50070  
[ngocpham@deloitte.com](mailto:ngocpham@deloitte.com)

## Office

### Hanoi Office

15<sup>th</sup>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 Ho Chi Minh City Office

18<sup>th</sup>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  
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이상근 회계사**  
**KSG 부대표**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mailto:keunslee@deloitte.com)

##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mailto: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is a member firm of Deloitte Global. Deloitte Asia Pacific members and affiliates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 more than 100 cities in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In member countries, business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dependently by separate legal entities.

####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document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and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therefore, no DTTL company, or any of its affiliates or subsidiaries and their employees shall be deemed to, within the scope of the content of this document, provide services or give opinions, professional advice for readers. This document does not constitute advice to the reader and shall not affect other advice provided by any employee of the Deloitte Foundation.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is document does not apply to the individual cases of the enterprise.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ial or business situation, you should consult a professional adviso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made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and no member of the Deloitte Companies Network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s, losses incurred directly or indirectly as a result of the reader’s use, publication, dissemination of, or reliance on this material to act, inaction, or make any decisions.